

법인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	
1	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[별지 제1호]
2	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[별지 제3호]
3	소득금액조정합계표[별지 제15호]
4	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(갑)(을)[별지 제50호 갑, 을]
5	최저한세 조정계산서[별지 제4호]
6	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(갑)(을) [별지 제8호 갑,을]
7	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[별지 제8호 부표]
8	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[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] *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50%)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
9	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[별지 제2호, 제12호] *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(50%)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
10	가산세액계산서[별지 제9호]
11	원천납부세액명세서(갑)(을)[별지 제10호 갑, 을]
12	표준대차대조표[별지 3호2(1), (3)]
13	합계표준대차대조표[별지 3호의2(2), (4)]
14	표준손익계산서[별지 3호3(1), (2)]
15	부속명세서[별지 3호3(3)]
16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[별지 제3호3 (4)]
17	주요계정명세서 (갑),(을)[별지 제47호(갑),(을)]
18	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[별지 제17호]
19	중소기업기준검토표[별지 제51]
20	접대비·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*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*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.
21	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의 부속서류(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-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(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)이 100억원 이상 -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